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
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속 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 중 총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6. ~ 8.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방형 직위에”를 “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원을 임용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를 “다만,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여야”를 “임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
닌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
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
니하고”를 “않고”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
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2년(외무공

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중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를 “인재”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동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스카우트 대상 확대 및 선발 시 면접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의 임용을 위하여 선발시험이 공고된 경우의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② · ③ (생 략) ④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u>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생 략)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개방형 직위에</u> 공무원(국 · 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선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u>개방형 직위에 다른 기관 소속</u>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 ----- ----- -----.
③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	③ ----- ----- -----

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u>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u>	----- -----<u>. 다만, 개방형 직위에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거나</u>-----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생략)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u>임용하여야</u> 한다. 1. ~ 3. (생략) 4.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u>일반직공무원</u>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임용해야</u>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일반직공무원</u> <u>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u>----- ③ ----- ----- ----- -----

른 선발시험으로 같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3년
2.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

-----.

--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1년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하였을 것

3. (생략)

④·⑤ (생략)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소속 장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② (현행과 같음)

③ -----

않고 -----

-----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

1. (현행과 같음)

2. -----
----- 2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

----- 인재 -----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해야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연 락 처	(044) 201 - 8351